



의안번호	제65호
------	------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2. 4. 13.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65호
----------	------

제출연월일 : 2022. 4. 1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수도법」 등 상위 법률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우리 시의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민복지 혜택 증대 및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우리 시의 취약 계층 지원 및 감면 대상자 확대를 위해 ‘장애인’, ‘다자녀가정’ 및 ‘소방용수 구경요금’ 을 추가함.(안 제40조)
- 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감면의 대상,방법,범위를 조례에 마련하여 기존의 조례안 신설 및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논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 대상 아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3. 15. ~ 2022. 4. 5. (21일간)
 - 나) 결 과 : 의견없음
 - 6)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7) 충청남도소관실과 : 물관리정책과 (☎041-635-2733)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구경별”을 “구경(口徑)별”으로 한다.

제36조 중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공공기관 및 군부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요금 및 수수료”를 “별표5와 같이 요금 및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급자, 가정위탁 세대로 시장이 따로 정한 자”를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세대
9.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10.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세대
11.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제41조제2항 중 “요금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에”를 “요금감면 절차에”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1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맑은물과장	김 영 천
안	수도행정팀장	신 미 숙
자	담 당 자	조 건 상 (7 4 6 - 6 3 5 3)

[별표 5]

수도요금 감면기준(제40조 관련)

구 분	감면율(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대상자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3. 중수도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장에 신고한 자	중수도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단, 공제량은 상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38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위기경보 발령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해당 재난·경보 선포 전·후 1개월간 요금의 전액감면(관공서 및 공공기관 제외)
5.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량의 2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6. 수도사용자 중에서 국·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시설	일반용 10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일반용 10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8.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9.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10.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11.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구경별 정액요금에 해당하는 요금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범위 내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1.~6.(생 략)</p> <p>7. “<u>구경별 요금</u>”이란 수도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p> <p>8.~12. (생 략)</p> <p><u>제36조(연체금 및 독촉)</u> -----</p> <p>-----</p> <p>다만, <u>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u>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u>요금 및 수수료</u>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p> <p>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u>수급자, 가정위탁세대로 시장이 따로 정한 자</u></p> <p>2.~7.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제2조(정의)-----.</p> <p>1.~6.(현행과 같음)</p> <p>7. “<u>구경(口徑)별 요금</u>”-----</p> <p>-----</p> <p>-----</p> <p>-----.</p> <p>8.~12. (현행과 같음)</p> <p><u>제36조(연체금 및 독촉)</u> -----</p> <p>-----</p> <p>다만, <u>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공공기관 및 군부대)</u>-----</p> <p>-----.</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p> <p>① -----</p> <p>-----<u>별표5와 같이 요금 및 수수료</u>-----.</p> <p>1. ----- <u>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u></p> <p>2.~7. (현행과 같음)</p> <p>8. 「<u>아동복지법</u>」에 따른 <u>가정위탁세대</u></p> <p>9. 「<u>장애인복지법</u>」을 적용받는 <u>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u></p>

<신 설>

<신 설>

8. (생 략)

② (생 략)

제41조(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생 략)

② 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10.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11.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12.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1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별표 5]수도요금감면기준(제40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액)</th> </tr> </thead> <tbody> <tr> <td>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td> <td>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td> </tr> <tr> <td>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td> <td>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td> </tr> <tr> <td>3. 중수도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장에 신고한 자</td> <td>중수도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 (단, 공제량은 상수도 사용량의 3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td> </tr> <tr> <td>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38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위기경보 발령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td> <td>해당 재난·경보 선포 전·후 1개월간 요금의 전액감면(관공서 및 공공기관 제외)</td> </tr> <tr> <td>5. 좋은 식단체를 실천하는 일반 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td> <td>상수도 사용량의 25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td> </tr> <tr> <td>6. 수도사용자 중에서 국·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시설</td> <td>일반용 10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td> </tr> <tr> <td>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td> <td>일반용 10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td> </tr> <tr> <td>8.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td> <td>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td> </tr> <tr> <td>9.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이 거주하는 세대</td> <td>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td> </tr> <tr> <td>10.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td> <td>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td> </tr> <tr> <td>11.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td> <td>구경별 정액요금에 해당하는 요금</td> </tr> <tr> <td>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td> <td>인정범위 내</td> </tr> </tbody> </table>	구 분	감면율(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3. 중수도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장에 신고한 자	중수도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 (단, 공제량은 상수도 사용량의 3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38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위기경보 발령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해당 재난·경보 선포 전·후 1개월간 요금의 전액감면(관공서 및 공공기관 제외)	5. 좋은 식단체를 실천하는 일반 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량의 25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6. 수도사용자 중에서 국·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시설	일반용 10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일반용 10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8.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9.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이 거주하는 세대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10.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11.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구경별 정액요금에 해당하는 요금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범위 내
구 분	감면율(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3. 중수도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장에 신고한 자	중수도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 (단, 공제량은 상수도 사용량의 3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38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위기경보 발령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해당 재난·경보 선포 전·후 1개월간 요금의 전액감면(관공서 및 공공기관 제외)																										
5. 좋은 식단체를 실천하는 일반 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량의 25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6. 수도사용자 중에서 국·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시설	일반용 10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일반용 10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8.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9.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이 거주하는 세대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10.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																										
11.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구경별 정액요금에 해당하는 요금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범위 내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 당 없 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해 당 없 음

나. 추계결과

○해 당 없 음

3. 작성자

맑은물과장 김 영 천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수 도 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략)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생략)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참고 2

개선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관련공문: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3931(2020,10.8.),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618(2021.5.21.)

○권고과제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3)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세부과제명: 각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요금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도 도입